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nited States: IRS provides FAQs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best practices”\(April 15th 2020\)](#)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이 발간한 이전가격문서화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대한 질의응답 제공

이전가격문서화 모범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은 IRS가 발간하는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지침(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rective)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납세자와 IRS는 해당 질의응답을 통해 우수한 이전가격 보고서의 작성기준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납세자가 이전가격 보고서를 구비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면제 외에도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까?

A1.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정 및 적용과정에 대해 잘 작성된 이전가격 보고서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조사 시 규정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초기에 이전가격 관련 이슈에 대한 조사관의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May 18th,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부대표\)](#)

(Tel: 02-2112-0907)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추가적인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분석한 기능위험, 무형자산, 가치창출요소 등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며, 납세자와 IRS 모두 낮은 위험의 이전가격 이슈에 대하여 과도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2. 이전가격 보고서를 구비하고 IRS 조사관의 질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이전가격 세무진단(self-assessment)"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A2. 납세자는 이전가격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자체 이전가격 세무진단"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교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수행할 경우, IRS가 제기할 수 있는 이슈를 잠재적으로 예측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의 비교가능회사를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분석대상법인의 수익성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납세자는 선정된 비교가능회사들이 실제로 비교가능한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Q3.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는 특수관계거래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IRS 가 제시하는 기본지침은 무엇입니까?

A3. IRS의 기본지침은 납세자가 미국 이전가격 세제 (IRC§482 등)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특수관계거래 당사자들은 비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적용하였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이전가격을 사용하여 거래하고, 이에 따른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와 IRS 모두가 특수관계거래에 사용되는 이전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와 IRS는 이전가격의 정상가격원칙 준수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납세자가 성실의무를 다하여 이전가격 보고서를 구비하는 것만으로도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고 몇 가지의 추가적인 질문만 제기한 후 세무조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분석대상법인과 직접 비교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심지어 비교가능한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비교가능회사가 없는 경우, 비교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불완전성을 보충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수행하여 차선의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Q4. IRS는 이전가격보고서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보고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A4. IRS는 이전가격 보고서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회사개요 및 산업분석 내용을 통해 특수관계거래의 발생배경을 명확히 설명
- 이전가격보고서 상 기능분석 내용과 사실관계 간의 일관성
- 위험분석과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간의 일관성
-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근거 및 다른 방법들을 선정하지 않은 근거 제시
- 적합한 수익성 지표 선정에 대한 분석을 포함
- 비교가능성 분석을 명확하게 설명
- 분석대상법인과 비교가능회사 간 위험 및 기능 상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기술
- 적용된 조정절차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세한 근거 제시

Q5. 특히 과세당국 입장에서 이전가격보고서상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5. IRS는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고서가 가지는 몇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충분히 설명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이외에도, 분석대상법인의 전체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문서화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는 계산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조사관이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거래가 가지는 일반적인 사업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특수관계거래 당사자 간에 배분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예를 들어, 제조물량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일 경우, 유통업자가 고정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전가격 정책을 통해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이러한 제조물량위험(volume risk)을 더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당사자들 간 수익의 분배

특정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거래 당사자들 중 일방은 수익이 너무 높거나 낮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보고서에는 초과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 그리고 어떤 당사자가 해당 초과수익을 배분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Q6. 조사관이 위험 평가 수행 시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A6. 이전가격 보고서의 초반부에서 회사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보 요약과 같이 간단한 것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IRS 조사관이 납세자의 거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약 정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조사관은 가장 중요한 거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OVID-19 – Implications and Considerations for Transfer Pricing \(April 8th 2020\)](#)

코로나 19가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19가 이전가격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다국적기업이 과세당국과의 향후 발생가능한 이전가격 이슈 및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대상 거래의 비교가능성 확보

기업의 재무성과 및 예상 실적은 일반적으로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선정된 비교가능거래 정보에 반드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가능거래 재무자료에 반드시 통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분석 수행 시 어떤 방식으로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간 거래가 변경되었음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이전가격방법 또한 적절하게 변경
- 비교분석 수행 시 선정된 비교가능 회사의 기능, 자산, 위험을 고려하고, 경제 침체 요소를 비교가능 데이터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
- 이전가격 관련 계약을 평가하여 외환 거래가 다국적기업 소속 회사 재정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

문서화 규정 준수 및 향후 세무조사를 위한 대비책 마련

납세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문서화 규정 준수 및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관련된 신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수행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전가격 정책 변경에 따른 적절한 문서화 구비를 위해 각 관할구역에서의 코로나 19로 인한 특정 영향을 상세히 기록
- 향후 세무 당국이 코로나 19로 발생한 기업 수익성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 시, 이에 대응하여 어떤 데이터를 보관할지 파악
- 회사 간 계약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된 사업활동에 중대한 사항 발생 시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코로나 19 영향으로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고(해당 국가 출장 후 제재 및 격리 정책 영향으로)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인해 세무 및 상업 운영모델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 구비

코로나 19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해당 APA 조건에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에 대한 재무 조정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지 검토합니다.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APA가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적용 불가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위험 관리

기업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이전가격 문서화를 구비하여 실무를 지원하고 중요 기능과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즉, 코로나 19 위기관리에 실패할 경우 어떤 기업이 손실을 감수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로 하여금 현재 코로나 19 경제환경 하에 수립된 회사간 이전가격계약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점검

중앙은행이 주요 금리를 인하하고 국채 장기 수익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유동성 위기로 인해 대출기업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 대차거래에 대한 이자율 산정 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기등급 대출자(speculative grade borrower)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

및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많은 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특정 부채를 재구성하거나 해지해야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대출 환경 현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전가격 위험 점검

코로나 19는 구조조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은 사업 구조조정이 이전가격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업 관련 관할 지역에서 적용 받는 이전가격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코로나 19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세무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 및 정책 변경에 필요한 문서화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룹간 원활한 Cash Flow 관리를 위한 이전가격 점검

기업의 매출액 및 수익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현금 흐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국적기업은 예상되는 불황으로 인한 영향을 대비하여 그룹사 전체의 현금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운영 활동에 현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배치하도록 세무목적으로 유리한 현금 송금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Malaysia: Further extension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deadlines \(COVID-19\) \(April 22, 2020\)](#)

말레이시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한 추가 연장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은 코로나 19 전염병에 대응하여 특정 납세 준수 기한을 연장하였고, 국가별보고서(CbCr) 및 국가별보고서 통지(CbC notification) 제출 기한 역시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 국가별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통지 제출 기한은 2020년 3월 31일 또는 2020년 4월 30일이었으나, 2020년 5월 15일 또는 2020년 5월 31일로 제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5일(국가별보고서 기존 제출 기한이 2020년 3월 31일이었던 기업의 경우)

2020년 5월 31일(국가별보고서 기존 제출 기한이 2020년 4월 30일이었던 기업의 경우)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국가별보고서 통지 기한은 2020년 5월 31일입니다(기존 국가별보고서 통지 기한이 2020년 3월 31일이거나 2020년 4월 30일이었던 기업의 경우).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